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2013노4413]

【전문】

【피고인】

【항 소 인】

【검 사】양진호(기소), 이정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고단2865, 3274(병합), 3799(병합) 판결

【주문】

1

피고인 1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 1)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55인치 대형 아몰레드 패널의 레이어(Layer)별 이미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 자료, 이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라고 한다)를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인 신용카드형 USB에 저장함으로써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7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패널 광학검사장비(AOI, 이하 'AOI 장비'라고 한다) 및 전기검사장비(AC, 이하 'AC 장비'라고 한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패널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검출력을 높이고,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이하 '디펙트 포지셔닝'(Defect Positioning)이라고 한다)를 해결하거나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등 업무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 아몰레드 패널 제조 기술을 유출시킬 고의는 없었다.
-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3 및 이스라엘의 피고인 회사 본사(이하 '〇〇〇'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들과 위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〇〇〇 사이에 자료를 작성하고 송부하는 행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 작성 및 공개 행위 자체는 고객사의 예견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득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위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2로부터 빌린 신용카드형 USB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가 보안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공을 거부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공유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을 이용한 업무상 자료의 작성 행위도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며, 업무상 자료를 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도 산업기술의 '공개'에 해당하고, 위 사용 행위가 반드시 공개 행위에 수반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사용과 별도로 공개도 처벌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의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없었는데, 공소외 1 회사가 2012. 1. 27. 이후 마스크 패턴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마스크 패턴 변경 이후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AOI 장비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유출한 이상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 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2012고단2865 공소사실]

【이유】

- 】1.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항소이유 요지
- 1)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55인치 대형 아몰레드 패널의 레이어(Layer)별 이미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 자료, 이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라고 한다)를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인 신용카드형 USB에 저장함으로써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7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패널 광학검사장비(AOI, 이하 'AOI 장비'라고 한다) 및 전기검사장비(AC, 이하 'AC 장비'라고 한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패널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검출력을 높이고,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이하 '디펙트 포지셔닝'(Defect Positioning)이라고 한다)를 해결하거나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등 업무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 아몰레드 패널 제조 기술을 유출시킬 고의는 없었다.
-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3 및 이스라엘의 피고인 회사 본사(이하 '〇〇〇'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들과 위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〇〇〇 사이에 자료를 작성하고 송부하는 행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3)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 작성 및 공개 행위 자체는 고객사의 예견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득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위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2로부터 빌린 신용카드형 USB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가 보안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공을 거부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공유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을 이용한 업무상 자료의 작성 행위도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며, 업무상 자료를 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도 산업기술의 '공개'에 해당하고, 위 사용 행위가 반드시 공개 행위에 수반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사용과 별도로 공개도 처벌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의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없었는데, 공소외 1 회사가 2012. 1. 27. 이후 마스크 패턴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마스크 패턴 변경 이후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AOI 장비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유출한 이상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 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2012고단2865 공소사실]

[이유]

】1.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55인치 대형 아몰레드 패널의 레이어(Layer)별 이미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 자료, 이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라고 한다)를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인 신용카드형 USB에 저장함으로써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7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패널 광학검사장비(AOI, 이하 'AOI 장비'라고 한다) 및 전기검사장비(AC, 이하 'AC 장비'라고 한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패널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검출력을 높이고,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이하 '디펙트 포지셔닝'(Defect Positioning)이라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 한다)를 해결하거나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등 업무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 아몰레드 패널 제조 기술을 유출시킬 고의는 없었다.

-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3 및 이스라엘의 피고인 회사 본사(이하 '〇〇〇'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들과 위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〇〇〇 사이에 자료를 작성하고 송부하는 행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 작성 및 공개 행위 자체는 고객사의 예견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득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위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2로부터 빌린 신용카드형 USB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가 보안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공을 거부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공유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을 이용한 업무상 자료의 작성 행위도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며, 업무상 자료를 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도 산업기술의 '공개'에 해당하고, 위 사용 행위가 반드시 공개 행위에 수반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사용과 별도로 공개도 처벌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의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없었는데, 공소외 1 회사가 2012. 1. 27. 이후 마스크 패턴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마스크 패턴 변경 이후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AOI 장비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유출한 이상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 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2012고단2865 공소사실]

[이유]

- 】1.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항소이유 요지
- 1)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55인치 대형 아몰레드 패널의 레이어(Layer)별 이미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 자료, 이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라고 한다)를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인 신용카드형 USB에 저장함으로써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7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패널 광학검사장비(AOI, 이하 'AOI 장비'라고 한다) 및 전기검사장비(AC, 이하 'AC 장비'라고 한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패널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검출력을 높이고,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이하 '디펙트 포지셔닝'(Defect Positioning)이라고 한다}를 해결하거나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등 업무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 아몰레드 패널 제조 기술을 유출시킬 고의는 없었다.
-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3 및 이스라엘의 피고인 회사 본사(이하 '〇〇〇'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들과 위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〇〇〇 사이에 자료를 작성하고 송부하는 행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 작성 및 공개 행위 자체는 고객사의 예견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득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위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2로부터 빌린 신용카드형 USB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가 보안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공을 거부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공유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을 이용한 업무상 자료의 작성 행위도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며, 업무상 자료를 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도 산업기술의 '공개'에 해당하고, 위 사용 행위가 반드시 공개 행위에 수반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사용과 별도로 공개도 처벌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의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없었는데, 공소외 1 회사가 2012. 1. 27. 이후 마스크 패턴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마스크 패턴 변경 이후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AOI 장비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유출한 이상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 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2012고단2865 공소사실]

[이유]

】1.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 1)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55인치 대형 아몰레드 패널의 레이어(Layer)별 이미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 자료, 이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라고 한다)를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인 신용카드형 USB에 저장함으로써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7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패널 광학검사장비(AOI, 이하 'AOI 장비'라고 한다) 및 전기검사장비(AC, 이하 'AC 장비'라고 한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패널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검출력을 높이고,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이하 '디펙트 포지셔닝'(Defect Positioning)이라고 한다)를 해결하거나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등 업무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 아몰레드 패널 제조 기술을 유출시킬 고의는 없었다.
-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3 및 이스라엘의 피고인 회사 본사(이하 '〇〇〇'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들과 위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〇〇〇 사이에 자료를 작성하고 송부하는 행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 작성 및 공개 행위 자체는 고객사의 예견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득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위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2로부터 빌린 신용카드형 USB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가 보안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공을 거부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공유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을 이용한 업무상 자료의 작성 행위도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며, 업무상 자료를 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도 산업기술의 '공개'에 해당하고, 위 사용 행위가 반드시 공개 행위에 수반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사용과 별도로 공개도 처벌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의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없었는데, 공소외 1 회사가 2012. 1. 27. 이후 마스크 패턴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마스크 패턴 변경 이후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AOI 장비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유출한 이상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 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2012고단2865 공소사실]

【이유】

- 】1.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항소이유 요지
- 1)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55인치 대형 아몰레드 패널의 레이어(Layer)별 이미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 자료, 이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라고 한다)를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인 신용카드형 USB에 저장함으로써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7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패널 광학검사장비(AOI, 이하 'AOI 장비'라고 한다) 및 전기검사장비(AC, 이하 'AC 장비'라고 한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패널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검출력을 높이고,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이하 '디펙트 포지셔닝'(Defect Positioning)이라고 한다}를 해결하거나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등 업무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 아몰레드 패널 제조 기술을 유출시킬 고의는 없었다.
-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3 및 이스라엘의 피고인 회사 본사(이하 '〇〇〇'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들과 위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〇〇〇 사이에 자료를 작성하고 송부하는 행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 작성 및 공개 행위 자체는 고객사의 예견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득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위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2로부터 빌린 신용카드형 USB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가 보안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공을 거부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공유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을 이용한 업무상 자료의 작성 행위도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며, 업무상 자료를 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도 산업기술의 '공개'에 해당하고, 위 사용 행위가 반드시 공개 행위에 수반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사용과 별도로 공개도 처벌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의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없었는데, 공소외 1 회사가 2012. 1. 27. 이후 마스크 패턴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마스크 패턴 변경 이후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AOI 장비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유출한 이상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 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2012고단2865 공소사실]

【이유】

- 】1.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항소이유 요지
- 1)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55인치 대형 아몰레드 패널의 레이어(Layer)별 이미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 자료, 이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라고 한다)를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인 신용카드형 USB에 저장함으로써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7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패널 광학검사장비(AOI, 이하 'AOI 장비'라고 한다) 및 전기검사장비(AC, 이하 'AC 장비'라고 한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패널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검출력을 높이고,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이하 '디펙트 포지셔닝'(Defect Positioning)이라고 한다)를 해결하거나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등 업무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 아몰레드 패널 제조 기술을 유출시킬 고의는 없었다.
-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3 및 이스라엘의 피고인 회사 본사(이하 '〇〇〇'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들과 위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〇〇〇 사이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에 자료를 작성하고 송부하는 행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 작성 및 공개 행위 자체는 고객사의 예견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득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위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2로부터 빌린 신용카드형 USB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가 보안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공을 거부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공유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을 이용한 업무상 자료의 작성 행위도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며, 업무상 자료를 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도 산업기술의 '공개'에 해당하고, 위 사용 행위가 반드시 공개 행위에 수반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사용과 별도로 공개도 처벌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의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없었는데, 공소외 1 회사가 2012. 1. 27. 이후 마스크 패턴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마스크 패턴 변경 이후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AOI 장비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유출한 이상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 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2012고단2865 공소사실]

【이유】

11.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55인치 대형 아몰레드 패널의 레이어(Layer)별 이미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 자료, 이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라고 한다)를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인 신용카드형 USB에 저장함으로써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7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패널 광학검사장비(AOI, 이하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AOI 장비'라고 한다) 및 전기검사장비(AC, 이하 'AC 장비'라고 한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패널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검출력을 높이고,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이하 '디펙트 포지셔닝'(Defect Positioning)이라고 한다}를 해결하거나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등 업무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 아몰레드 패널 제조 기술을 유출시킬 고의는 없었다.

-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3 및 이스라엘의 피고인 회사 본사(이하 '〇〇〇'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들과 위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〇〇〇 사이에 자료를 작성하고 송부하는 행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 작성 및 공개 행위 자체는 고객사의 예견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득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위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2로부터 빌린 신용카드형 USB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가 보안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공을 거부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공유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을 이용한 업무상 자료의 작성 행위도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며, 업무상 자료를 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도 산업기술의 '공개'에 해당하고, 위 사용 행위가 반드시 공개 행위에 수반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사용과 별도로 공개도 처벌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의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없었는데, 공소외 1 회사가 2012. 1. 27. 이후 마스크 패턴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마스크 패턴 변경 이후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AOI 장비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유출한 이상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 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고단2865 공소사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